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조계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318

발의연월일: 2025. 1. 8.

발 의 자: 조계원·김문수·주철현

김우영 • 양문석 • 양부남

민병덕 · 임오경 · 박지원

윤준병 • 이개호 • 소병훈

신정훈 • 민형배 • 이강일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영화관의 영화 상영과 관련하여 예고편이나 광고영화의 상영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음.

일반적으로 영화 관람 시 다수의 광고 및 예고편이 상영되어, 관람 객이 원하지 않는 광고 및 예고편영화 등에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경 우가 많음. 이로 인해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영화관을 찾은 관람객 의 영화 감상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영화상영관 경영자 등으로 하여금 실제 영화상영시간을 광고 및 예고편영화의 시간과 구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화상영관입 장권 등에 공지 및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영화 관람객의 영화감상권을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41조의2 및 제98조제3항제3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1조의2(영화상영시간의 공지 등) ①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 상영장을 설치·경영하는 자는 영화의 상영 시작시간과 종료시간(이 하 "영화상영시간"이라 한다)을 예고편 및 광고영화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구분하여 관람객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영화상영관입장권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.

② 영화상영시간의 공지 및 표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제98조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영화상영시간을 공지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41조의2(영화상영시간의 공지
	등) ①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
	비상설상영장을 설치ㆍ경영하
	는 자는 영화의 상영 시작시간
	과 종료시간(이하 "영화상영시
	간"이라 한다)을 예고편 및 광
	고영화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
	구분하여 관람객이 미리 알 수
	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
	지하고 영화상영관입장권 등에
	표시하여야 한다.
	② 영화상영시간의 공지 및 표
	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
	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제98조(과태료) ①・② (생 략)	제98조(과태료) ①・② (현행과
	같음)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③
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	
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	
1. · 2. (생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3.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
	영화상영시간을 공지하지 아
	<u>니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자</u>

<u>3.</u> (생 략)

<u>4.</u> (현행 제3호와 같음)